

『2019년 재도전 성공패키지(2차)』 신용회복위원회(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지부 안내

- ※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온라인(K-스타트업) 신청 시, '채무 조정 필요 여부'에 '여'로 체크한 경우 반드시 아래의 지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 ※ 사업 신청 완료 후, 채무조정 상담 등을 위해 해당 지부에 방문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택 및 직장 인근의 센터 선택 권장**

지부명	주소
서울중앙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6층
관악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 578(조원동 1643) 광안빌딩 6층
부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연산동 1422-8) 국민연금공단 16층
서대구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두류동 150-6) 삼희빌딩 2층
인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31 (구월동 1112) 인천고용복지+센터 3층
광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21 5층
수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KT&G 코스모수원빌딩 8층
광주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금남로5가 127) 우리종합금융빌딩 6층
의정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16 (의정부동 141-3) 한화생명빌딩 4층
대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구. 충남도청사 본관3층
고양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장항동 890-7) 흥국생명빌딩 5층
창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상남동 27-3) 창원고용복지+센터 1층
안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고잔동 541-2) 남양빌딩 5층
전주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진북동 410-1) 전주고용복지+센터 2층
울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삼산동 1604-2) 울산고용복지+센터 1층

지부명	주소
사상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괘법동 558-2) 송원센터빌딩 10층
성남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구미동 23-3) 성남고용복지+센터 2층
노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5(상계동 709) 인산빌딩 3층
안양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0(안양1동 622-207) 남서울빌딩 7층
제주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이도1동 1292-3)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청주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북문로 1가 9-3) 대우증권빌딩 4층
순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9(저전동 226-2) 동양생명빌딩6층
강릉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1001) 강릉시청 15층
원주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6(무실동 1718-4) 씨티타워 2층
포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죽도동 618-3) 포항고용복지+센터 4층
천안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신부동 467-5) 삼성생명빌딩 9층
부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상동 454-2) 용운빌딩 8층
구미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73)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양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77(신정동 995-6) 정동빌딩 7층
목포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남악리 197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춘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45 2층
충주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홍성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충청남도 홍성읍 오관리 261 충남빌딩 6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문의사항은 상담센터(☎ 1600-5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조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안)

절 차	주 체	주 요 내 용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 ▸ 위원회 방문 필요
↓		
채권신고	채권금융회사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내역 제출
↓		
심 사	위원회	채무조정안 작성, 채무조정 적정성 여부 판단
↓		
동 의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안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여부 회신
↓		
채무조정 확정 (채무조정 합의)	위원회 채무자	채권금융회사를 대리한 위원회가 채무자와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 위원회 방문 필요
↓		
변제계획 이행	채무자	변제금 납입
↓		
지원종료	-	면책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절차는 상기와 같으며, 채무조정 확정까지는 신청일로부터 평균 2개월 정도 소요

※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시 채무 조정이 필요한 자는 '채무 조정 필요 여부'에 '여'로 체크, '상담 지부 및 채무조정 상담 요청일'을 선택하여야 함

→ 이후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참여 및 조정 가능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 전까지 조정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재도전 성공패키지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참조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문

1. 신용회복위원회 소개

-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채무조정제도 안내

가. 개인워크아웃

- (신청대상)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은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액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고 채무의 연체일수가 3개월 이상인 채무자입니다.
- (채무감면) 이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며, 원금은 금융회사가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70~90% 범위 내에서 감면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 6개월 전 발생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원금 감면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원금분할상환,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범위 내에서 원리금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나. 프리워크아웃

- (신청대상) 프리워크아웃 신청대상은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액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고 채무의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 다만, 현재 채무의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고, 1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채무자도 프리워크아웃 신청 가능합니다.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조정) 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자율의 1/2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 이자율은 연 10.0%를 적용하고 최저 이자율은 연 5.0%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최저이자율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은 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자율의 최대 65% 범위 내에서 인하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범위 내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

구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무자	▷ 연체일수가 3개월 이상인 자	▷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자
대상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채무금액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채무조정 내용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금융회사가 손실처리한 채권에 한하여 최대 20~70% 범위 내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70~90%)에서 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약정이자율의 1/2 범위 내 인하 - 최고이자율 연 10.0% - 최저이자율 연 5.0%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범위 내 원리금분할상환 ▷ 담보채무 최장 35년 범위 내 원리금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범위 내 원리금분할상환 ▷ 담보채무 최장 35년 범위 내 원리금분할상환
신청비용	▷ 5만원	▷ 5만원

3.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 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① 본인이 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② 방문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가족에 한하여 대리인이 신청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cyber.ccrs.or.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본인 방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를 지참 후 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② (대리인 방문) 채무자의 가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자격이 인정되며, 이때 대리인은 채무자 본인 실명확인증표, 채무자 인감도장, 채무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채무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 후 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채무조정 신청 유의사항

□ 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제도로써 채무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합계액이 과반수 이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신청자격, 상환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①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제2항의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채무자가 위원회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채무자가 채무조정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그 밖에 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절차 진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